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97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김재원 · 황운하 · 박정현
송기현 · 신장식 · 서영석
서왕진 · 김준형 · 정춘생
정혜경 · 김윤덕 · 전종덕
황명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전자문서로 변환한 전자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 신청 및 전송) ①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희망하는 선거인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7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자의 수를 합계하여 그 수를 제외한 수량의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각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한 선거인에게는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한다.

④ 전자선거공보 신청서, 전자선거공보 신청 및 발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거공보의 발송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⑤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u><후단 신설></u>	⑥ ----- ----- . 이 경우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전자문서로 변환한 전자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다)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⑭ (생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 신청 및 전송) ①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희망하는 선거인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7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u>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자의 수를 합계하여 그 수를 제외한 수량의 선거공보를 작성 · 제출하도록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각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u> <u>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한 선거인에게는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한다.</u> <u>④ 전자선거공보 신청서, 전자선거공보 신청 및 발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7. (생 략) ④ · ⑤ (생 략)	<u>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u> <u>거공보의 발송비용</u>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